

# 2023년도 제1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6. 19.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김연희,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33회·13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820건(안건번호 제2023-65274호~6709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65274호~65282호(순번 1번~12번)해외사이트 등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제2023-65283호~-65285호(순번 10번~12번)은 ‘저작권 침해 정보’가 제거된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65286호(순번 13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여부가 불분명하고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65287호~65296호(순번 14번~23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 안전번호 안전번호 제2023-65297호~67093호(순번 24번~1820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3,25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13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146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3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3,315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1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및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 총 49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 '△△△', '♥♥♥♥ ♥♥♥♥', '⊙⊙' 등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다만, 순번 10번~12번의 경우, 현재 '저작권 침해 정보'가 제거된 점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12번 해외사이트 등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현재 저작권 침해 정보가 제거된 게시물의 경우는 새로운 유형 같음. 다시 자세하게 보여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순번 10 내지 12번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증거 자료에는 링크가 있고, 이후 링크만 제거하고 다른 게시물 내용은 모두 같은 상태임.
- B 위원: 보고해주신 안전들은 전체적으로 일본어로 된 만화책에 한글번역을 덮어씌워서 게시하고 있는 사안임. 그럼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음.

- A 위원: 그림 자체는 침해가 맞음.
- B 위원: 그러함. 이전에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결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 심의 대상 게시물에 광고가 있는지?
- 김선화 선임: (안전 자료를 제시하면서)광고가 있는 상태임.
- B 위원: '△△△'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안전 게시물은 게시된 지 1년이 경과하였음.
- A 위원: 그렇다면, 블로그 자체의 성격도 봐야할 것으로 보임. 블로그 이웃이나 조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 김선화 선임: 게시물별로 조회수는 확인되지 않고, 블로그의 전체 조회수는 확인됨.
- C 위원: 전체위원회 안전으로 회부하는 것은 어떠한지?
- B 위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기준을 잡는 것으로 하고 해당 건은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시정권고 취지에 따라 그 기준에 게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것은 보호원에서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되었으면 함.
- A 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임의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게시기간이 오래되었어도 거래가 계속된다거나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어서 기간만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D 위원: 같은 의견임. 블로그 게시물의 경우 블로그가 폐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저작권 침해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상황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9번은 가결하고, 순번 10번 내지 12번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3번 내지 2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와 '♣♣♣♣'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1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3번 내지 23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순번 13번은 중고책을 판매하면서 ‘♠♠♠♠♠♠♠’를 제공하는 것인데, 중고책 판매는 문제가 되지 않고, ‘♠♠♠♠♠♠♠’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책과 별도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 간에 공유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C 위원: ‘♠♠♠♠♠♠♠’가 무엇인지?
- B 위원: 책의 풀이집에 해당함. 보통 출판사에서 교재의 경우는 풀이까지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E 위원: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라면 결국 책의 저자에게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닌지?
- B 위원: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는 현재 게시물 정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음.
- C 위원: 그렇다면 공정이용으로도 불 여지가 발생함.

- B 위원: 게시자의 전체 판매 리스트를 보여주기 바람.
- 김선화 선임: (조사 자료를 제시함)
- B 위원: 일단 해당 안건은 게시일자를 보니 시일이 많이 지나서 해당 정책에 대한 개정본이 몇 번은 더 나왔을 것으로 보여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없어 보임.
- A 위원: 저작권의 귀속 및 침해 여부도 불분명함.
- B 위원: 정리하자면, '♠♠♠♠♠♠♠'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고, 게시물의 게시 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저작물의 성격상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결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순번 13번은 부결로 의결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번은 부결하고 순번 14번 내지 23번은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4번 내지 182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3,255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존 워 4'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4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영화 '존 워 4'임. 2023. 4. 12. 극장 개봉하여 현재 OTT에서 판매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150분 분량을 판매중인 사안임.

(영화 '인어공주'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0번은 영화 '인어공주'로, 2023. 5. 24.에 극장 개봉하여 현재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임.

(드라마 '오! 영심이'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92번은 영화 '오! 영심이'임. 2023. 5. 15.부터 방영중인 드라마의 4화 한 화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바로보기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24번부터 1820번까지 총 3,255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음악,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4번 내지 182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65274호~65282호(순번 1번~9번)에 대해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65283호~-65285호(순번 10번~12번)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65286호(순번 13번)에 대해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65287호~65296호(순번 14번~23번)에 대해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그 외 안전번호 제2023-65297호~67093호(순번 24번~1820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1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4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6. 26.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

위원 김연희